

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1292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2. 4.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9.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55,905,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달 28일 C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C의 어머니 E은 2021.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E의 배우자인 F와 자녀인 C, 피고, G이 있었는데, 2022. 4. 10.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는 C의 기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